

2020년도 제27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11. 02.(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 백대용(분과위원장), 오영주 위원, 이성엽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26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한국저작권보호원 오진해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 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969건(안전번호 제2020-142025호~제2020-143489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142025호~142051호는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 방조행위에 해당하고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142052호~142056호 네이버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사안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143489호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건은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3,91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75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6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오진해 전문위원: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5쪽의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 8쪽의 밴드명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해야 할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A 위원: 회의록 전문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상이 없음.
- B 위원: 해당 부분은 비식별 처리한 후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 C 위원: 이견없음.
- D 위원: 회의록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비식별 처리안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밴드명, 민원인이 신고한 저작물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

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Autodesk Inc.', 'TCO(주)더콘텐츠온', '넷플릭스', '미국 CWTV', '미국 Showtime', '영국 Sky One',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일본 NTV', '콘텐츠웨이브'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 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7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3,96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0-142025호~제2020-143489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2025호~14205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

으로, 오픈마켓 또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안전번호 제2020-142025호 게시물에서 판매하고 있는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디지털포렌식센터 직원이 직접 시연해보도록 하겠음.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작동하면서)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영화, 드라마 뿐 아니라 전세계 방송을 모두 볼 수 있음.
'○○○○○○○○' 메뉴에서는 방영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 TV 방송물을 볼 수 있음. (우리나라 드라마를 재생하면서) 최신 드라마의 경우 방영되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업데이트된 것을 볼 수 있음.
- B 위원: 제조사가 한 곳인지?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모두 다름. 기기 분석 용역을 진행중인데 기기를 뜯어 확인해보니 제조사가 매우 다양해서 특정할 수 없다고 함.
- C 위원: 일반 소비자가 기기 연결은 손쉽게 할 수 있는지?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HDMI 선을 이용하여 TV, 모니터 등에 손쉽게 연결할 수 있음.
- B 위원: 화질은 선명한지?
- A 위원: 방송 프로그램은 화질이 좋아도 영화는 안좋은 것으로 예상

됨. 영화를 시연해주시기 바람.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우리나라 영화를 재생함)
- B 위원: 화질이 좋아보임.
- C 위원: 중국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인지?
- 디지털포렌식센터 ☆☆☆ 주임: 구매한 기기의 제조국은 중국, 미국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주로 중국에서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제품설명서 등이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임.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음.
- 오진해 전문위원: 직접 보신 것과 같이 본 건 기기에 전용 앱(app)을 설치하면 뉴스, 드라마 등 실시간 TV 방송을 무단 이용할 수 있고, VOD서비스도 무단 이용할 수 있음.
주된 목적은 저작권자 또는 방송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방송물들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심의대상 게시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기기 판매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42025호~14205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B 위원: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방조 행위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고,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므로 가결함.
- A 위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가결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D 위원: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자 및 구매희망자들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42025호~14205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42052호~142056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 ‘●●●●●●’, ‘○○○○○○○○○○○○○○○○’의 한 화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42052호~142056호

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이 영상저작물을 무단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결함.
- D 위원: 일본 저작물을 우리나라 저작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음. 가결함.
- C 위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함.
- B 위원: 블로그의 일본 애니메이션 게시물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42052호~142056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42057호~143488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게임, 출판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국제수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20-142057호는 2020. 9. 29. 개봉하여 현재까지 상영 중인 우리나라 영화 '국제수사'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187포인트에 판매 중인 건임. 누적관객수는 2020. 11. 1. 기준으로 534,906명이며 2020. 10. 20. IPTV 및 VOD 서비스를 시작함. 해당 저작물은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10,000원에 대여, 14,900원에 구매할 수 있음.

(영화 '패왕별희 디 오리지널'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2467호는 영화 '패왕별희 디 오리지널'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56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해당 영화는 1993. 12. 24. 우리나라에서 개봉하였고, 2017. 3. 30. 및 2020. 5. 1. 재개봉하여 현재 상영중임.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2,500원에 이용할 수 있음.

(컴퓨터 프로그램 'AutoCAD'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42626호는 오토데스크사의 소프트웨어인 AutoCAD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22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일련번호, 제품키 및 key generator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해당 저작물은 연간 라이선스 이용료 2,160,620원에 이용할 수 있음.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0-142057호~14348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

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42057호~143488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4348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사안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백대용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14348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직접 확인함) 안전번호 제2020-143488호와 동일한 게시물임을 확인하였고, 부결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43489호는 부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43489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142025호~143488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

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4.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27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75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11. 09.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이성엽